

「KEB하나 국민연금 안심(安心)통장」 특약

제 1 조 적용범위

“KEB하나 국민연금 안심(安心)통장(이하 "이 예금"이라 함)”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 기본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및 개별 계좌의 해당 예금 별 거래약관과 국민연금법, 민사집행법, 동 시행령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2 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합니다.

제 3 조 예금과목

이 예금의 예금과목은 저축예금으로 합니다.

제 4 조 적용금리 및 이자지급

- ① 이 예금의 이자는 해당 기준일(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제3금요일)에 셈하여 기준일에 이온 익일(이하 '원가일'이라 함)에 원금에 더합니다.
- ② 제 1항의 예금이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로부터 원가일 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기간으로 하고,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하는 이율로 계산합니다.

제 5 조 수수료 우대

이 예금으로 매월 말일자 기준으로 당월에 국민연금 급여가 입금된 경우, 익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간 이 예금을 통한 아래의 거래에 대하여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①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또는 타행 이체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
- ② 폰뱅킹(ARS),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
- ③ 납부자 자동이체(타행 자동이체 포함)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
- ④ 환전, 송금 시 환율 스프레드 최고 50% 우대

제 6조 부가서비스

이 통장을 통하여 일반 상호부금 신규가입(자동이체 지정) 할 시 0.2% 우대금리를 추가 제공합니다.

제 7 조 입금제한

- ① 이 예금으로의 입금은 국민연금 수령액으로 국민연금법 제54조의2,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44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이하 “관련 법령”이라함)에서 정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보호금액(이하 “보호금액”이라함)까지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단, 통장의 잔액은 금액에 제한없이 유지가 가능하며 입금 제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② 매월 입금되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제1항의 보호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호금액까지만 이 통장으로 입금되며, 초과한 금액은 입금이 제한되지 않는 별도의 통장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호금액이 변경될 경우 입금한도도 이에 맞추어 변경됩니다.

제 8 조 거래제한

- ① 이 예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입금된 예금과 이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없고, 압류에 의한 지급제한이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 ② 이 예금은 은행이 상계할 수 없습니다.
- ③ 이 예금은 양도 및 담보제공 할 수 없습니다.
- ④ 이 예금은 통장대출(한도대출)의 대출계좌(기본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⑤ 이 예금을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에, 결제금액 또는 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결제취소 또는 납부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제7조의 입금제한(입금은 국민연금 급여에 한한다)에 따라 예금주가 직접 해당기관에 결제금액 또는 납부금액을 납부하거나(또는 해당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 예금주가 해당기관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 9 조 세제혜택

이 예금은 비과세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예금자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부칙>

이 특약은 2016년 6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